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

발의년월일 : 2002년 9월 24일

발 의 자 : 김수나 의원외 15인

1. 개정이유

○ 대형점 출현으로 위기감을 맞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. 12. 20 「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」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정 공포되어

○ 자치단체 또는 상인회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 골목(도로)에 전천후 시설인 비가리개 등(아케이드)를 설치하거나 설치중에 있으며 또한, 우리시에서도 중앙식료시장에 설치계획중에 있어

○ 비가리개 시설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가. 가설건축물 추가 지정(안 제8조)

○ 차양시설·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[시장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·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(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.)에 설치하는 것]

3. 개정 조례안 : 별 첨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5. 관계법령

○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

○ 목포시건축조례 관련조문

6. 관련부서의견 : 해당없음

7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 : 생 략

9. 사전협의사항 : 해당없음

10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목포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차양시설·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[시장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·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(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.)에 설치하는 것]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